

의안번호	제 354 호
의 결 연 월 일	2012년 6월 일 (제 311 회)

**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12년 6월 4일

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5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2. 6. 4.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1. 제안이유

2012. 7. 1.자 본청 기구 개편으로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, 충청북도교육정보원(2012. 9. 1.) 신설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의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,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국장의 분장사무 외에 교육감 및 부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보좌기관의 사무를 정함(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)
- 나. 교육국장 분장사무 중 "학교 교육정책의 개발 조정" 업무를 삭제함(안 제6조제17호)
- 다. 기획관리국을 행정관리국으로 변경하고, 행정관리국장 분장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삭제함(안 제5조의2, 제7조)
 - 1)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,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

- 2) 주요업무계획의 수립
- 3) 교육개혁에 관한 사항
- 4)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·실시
- 5)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
- 6) 각종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

라.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신설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의 업무 중 "교육정보화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"과 "정보화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"을 삭제함(안 제10조제7호 및 제10호)

마. 충청북도교육정보원의 주소를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함(안 제32조)

바. 현행 조례의 이용과 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조번호(가지조문)를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함(안 제32조부터 제46조까지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2) 입법예고 : 2012. 5. 11. ~ 2012. 5. 31.

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4) 부패영향평가 : 평가결과 해당없음

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과·담당관의 설치 등) ① 교육감, 부교육감 소속으로 공보, 감사,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·조사·분석·평가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.

② 본청의 과·담당관과 여유기구, 한시기구 및 직속기관의 부·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의2 본문 중 "기획관리국"을 "행정관리국"으로 한다.

제6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7.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

제7조의 제목 "(기획관리국)"을 "(행정관리국)"으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"기획관리국장"을 "행정관리국장"으로 한다.

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조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7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8.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

제7조제20호를 삭제한다.

제10조제7호를 삭제 한다.

제10조제10호 중 "과학 및 정보화관련"을 "과학 관련"으로 한다.

제31조의1을 제32조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산남동 4-3번지"를 "청남로 1931"로 한다.

제31조의2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제33조부터 제46조까지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제10조 제7호 및 제 10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충청북도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제2호 중 "기획관리국장·감사담당관"을 "행정관리국장·감사관"으로 한다.

② 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"기획관리국장"을 각각 "행정관리국장"으로 한다.

③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호와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획관리국”을 각각 “행정관리국”으로 한다.

④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1호 중 “기획관리국장·행정예산과장”을 “행정관리국장·기획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기획관리국장”을 “행정관리국장”으로 한다.

⑤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 중 “기획관리국장”을 “행정관리국장”으로 한다.

⑥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1호 중 “기획관리국장”을 “행정관리국장”으로 하고, “행정예산과장”을 “행정과장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과·담당관의 설치 등) 본청의 과·담당관과 여유기구, 한시기구 및 직속기관의 부·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3조(과·담당관의 설치 등) ① 교육감, 부교육감 소속으로 공보, 감사,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·조사·분석·평가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.</p> <p>② 본청의 과·담당관과 여유기구, 한시기구 및 직속기관의 부·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</p>
<p>제5조의2(국의 설치) 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국 및 기획관리국을 둔다.</p>	<p>제5조의2(국의 설치) ----- ----- ----- 행정관리국 -----.</p>
<p>제6조(교육국) 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16. (생략)</p> <p>17. <u>학교 교육정책의 개발 조정 및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</u></p>	<p>제6조(교육국) ----- -----.</p> <p>1. ~ 16. (현행과 같음)</p> <p>17. <u>학교평가에 관한 사항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18. · 19. (생 략)</p> <p>제7조(<u>기획관리국</u>) <u>기획관리국장</u>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<u>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,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 <u>주요업무계획의 수립</u></p> <p>3. <u>교육개혁에 관한 사항</u></p> <p>4. ~ 6. (생 략)</p> <p>7. <u>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·실시</u></p> <p>8. <u>예산의 편성·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</u></p> <p>9. ~ 19. (생 략)</p> <p>20. <u>각종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</u></p> <p>21. (생 략)</p> <p>제10조(업무) 연구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</p>	<p>18. · 19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<u>행정관리국</u>) <u>행정관리국장</u>-----.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4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8. <u>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</u></p> <p>9. ~ 19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21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업무) -----.</p>

현 행	개 정 안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<u>교육정보화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</u>	<삭 제>
8. · 9. (생 략)	8. · 9. (현행과 같음)
10. <u>과학 및 정보화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</u>	10. <u>과학 관련</u> ----- -----
<u>제31조의1(설치) ①</u> (생 략)	<u>제32조(설치) ①</u> (현행과 같음)
② 교육정보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<u>산남동 4-3번지</u> 에 둔다.	② ----- ----- <u>청남로 1931</u> ----- --.
<u>제31조의2 ~ 제31조의9</u> (생 략)	<u>제33조 ~ 제40조</u> (현행 제31조의2에서 제31조의9와 같음)
<u>제32조 ~ 제37조</u> (생 략)	<u>제41조 ~ 제46조</u> (현행 제32조에서 제37조와 같음)

□ 충청북도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당연직 위원은 4명으로 하고, 부교육감·교육국장·<u>기획관리국장·감사담당관</u>으로 한다.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<u>행정관리국장·감사관</u>-----.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
□ 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11조(공적심의위원회) ① (생략)</p> <p>② 교육감 소속 위원회는 부교육감, 교육국장, <u>기획관리국장</u>, 담당관 및 각 과장으로 구성하되,</p>	<p>제11조(공적심의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행정관리국장</u>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,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, 위원은 <u>기획관리국장</u>, 담당관 및 각 과장으로 하고,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총무과 인사담당사무관이 된다.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	<p>----- ----- <u>행정관리국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
□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공인 관수자) 공인 관수자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.</p> <p>1. 교육감 및 보조기관 직인 : <u>기획관리국</u> 총무과 업무담당사무관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민원사무전용 교육감 직인 : <u>기획관리국</u> 총무과 업무담당사무관</p> <p>4. ~ 8. (생략)</p>	<p>제9조(공인 관수자)----- -----.</p> <p>1. -----<u>행정관리국</u>-----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<u>행정관리국</u>----- -----</p> <p>4. ~ 8. (현행과 같음)</p>

□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.</p> <p>1. 당연직위원 : 부교육감·교육국장·<u>기획관리국장</u>·<u>행정예산과장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③ 위원장은 부교육감, 부위원장은 <u>기획관리국장</u>이 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2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<u>행정관리국장</u>·<u>기획관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행정관리국장</u>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□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회계공무원)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</p> <p>1. 기금운용관 : <u>기획관리국장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7조(회계공무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<u>행정관리국장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□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심의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원 중 3명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,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</p> <p>1. 본청에 두는 심의회 위원장은 <u>기획관리국장</u>,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으로 하고, <u>행정예산과장</u>, 시설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민간위원은 공유재산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민간인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.</p> <p>2. · 3. (생략)</p> <p>③ ~ ⑦ (생략)</p>	<p>제5조(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행정관리국장</u>----- ----- <u>행정과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·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
關係法令拔萃

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[법률 제10046호, 2010.2.26, 일부개정]

제18조(교육감) ①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·도에 교육감을 둔다.

② 교육감은 교육·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·도를 대표한다.

제19조(국가행정사무의 위임) 국가행정사무 중 시·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. 다만,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0조(관장사무) 교육감은 교육·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

1.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
2.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
3.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
4.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
5. 학교,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·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
6.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
7. 과학·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
8. 평생교육, 그 밖의 교육·학예진흥에 관한 사항
9. 학교체육·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
10.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
11. 교육·학예의 시설·설비 및 교구(教具)에 관한 사항
12.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사항
13. 특별부과금·사용료·수수료·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

- 14. 기채(起債)·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
- 15.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한 사항
- 16.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
- 17. 그 밖에 당해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

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[제22698호, 2011. 3. 7, 일부개정]

- 제7조(실·국등 기구의 설치) ① 본청에 두는 실·국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은 당해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되, 실·국 및 과·담당관의 설치범위는 별표 1과 같다.
- ② 본청에는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실·국의 명칭과 사무분장은 중앙교육행정조직과 지방교육행정조직간의 연계성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- 제8조(보조·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) ① 본청에 두는 부교육감·실장·국장·과장 및 담당관 등 보조·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3과 같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에 두는 보조·보좌기관의 직급 등은 당해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05.3.31, 2006.2.10>

본청 실·국 및 과·담당관의 설치범위(제7조제1항관련)

구 분		실·국의 수	과·담당관의 수
서울특별시 교육청		4실·국이내	16과·담당관이내
부산광역시 교육청		2실·국이내	12과·담당관이내
경기도 교육청		5실·국이내	24과·담당관이내
광역시	인구 : 800만이상 학생 : 160만이상	3실·국이내	13과·담당관이내
	인구 : 400만이상 학생 : 80만이상	3실·국이내	12과·담당관이내
	인구 : 200만이상 학생 : 40만이상	2실·국이내	11과·담당관이내
	기 타	2실·국이내	10과·담당관이내
도	인구 : 600만이상 학생 : 120만이상	3실·국이내	13과·담당관이내
	인구 : 300만이상 학생 : 60만이상	3실·국이내	12과·담당관이내
	인구 : 150만이상 학생 : 30만이상	2실·국이내	11과·담당관이내
	기 타	2실·국이내	10과·담당관이내

비 고

1. 실·국 및 과·담당관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보조기관의 직급에 상응하는 정원을 실·국 및 과·담당관의 명칭이 아닌 기구의 정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표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
2. 학생수는 각급학교의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학생수를 말하고, 인구수는 주민등록 표상의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인구수를 말하며, 학생수·인구수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